



제 428국회 (정기회)
제 2차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 등〉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29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3
2.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	12
3. 기업신용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신설 등	1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1.

다. 회 부 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 및 매출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를 주기 위해 기술금융을 도입하였음.

○ 기술금융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에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이하 “TCB평가”라 함)를 의뢰하거나, 자체 평가가 가능한 경우 자체 TCB평가를 수행함.

- 2025. 5. 기준, 기술신용평가사는 총 6개사, 자체 TCB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은 10개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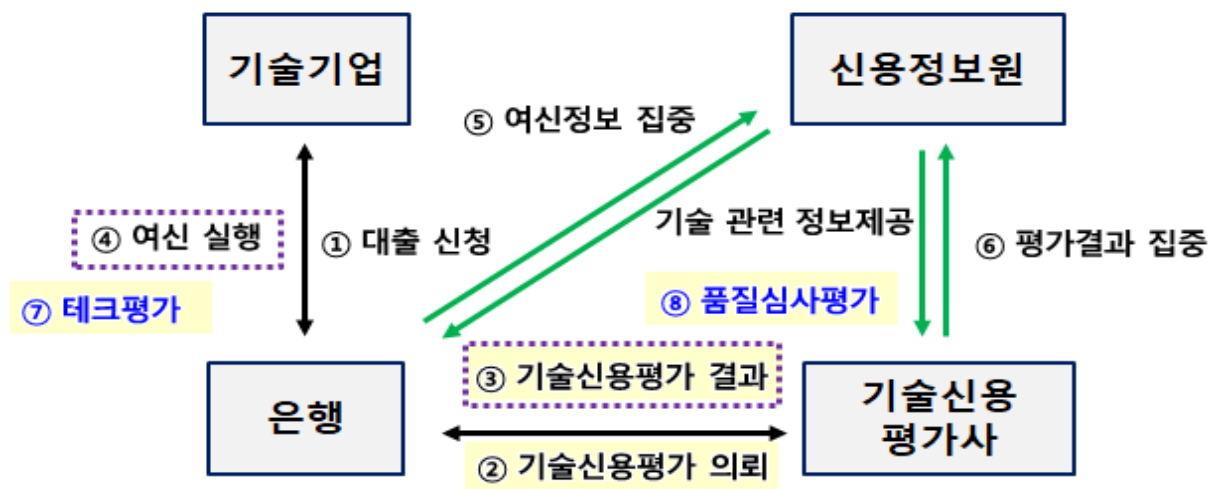
[표 1] 기술신용평가기관 분류

구분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사 (6개사)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한국기술신용평가
은행 (10개사)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 산업은행

(자료: 금융위원회)

-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여신을 실행하게 되는데, 기술등급이 T6등급¹⁾ 이상인 평가서를 참고한 여신에 대해서만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은행의 여신정보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 등을 토대로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기술평가 품질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함.

[그림 1] 기술금융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금융은 2014년 도입 이후 10여년 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1) 기술평가 등급은 기술 및 아이디어 경쟁력, 기술사업화 능력, 미래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T1부터 T10까지(T3~T6 등급은 +/0/- 세부등급 추가) 총 18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TECH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가감비율에 활용하고 있음²⁾.
- 이러한 은행별 TECH평가 순위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이 부담하는 출연금의 3~10%를 감액하거나 2~7%를 가산하고 있음.

[표 2] TECH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금 가감비율

구분	상위 1위	상위 2위	하위 3위	하위 2위	하위 1위
대형은행	- 10%	- 5%	+ 3%	+ 5%	+ 7%
소형은행	- 7%	- 3%	+ 2%	+ 3%	+ 5%

-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2016년 92.9조원에서 2023년 304.5조원으로, 평가건수는 동일한 기간 동안 11.6만건에서 30.7만건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 중 기술금융

2)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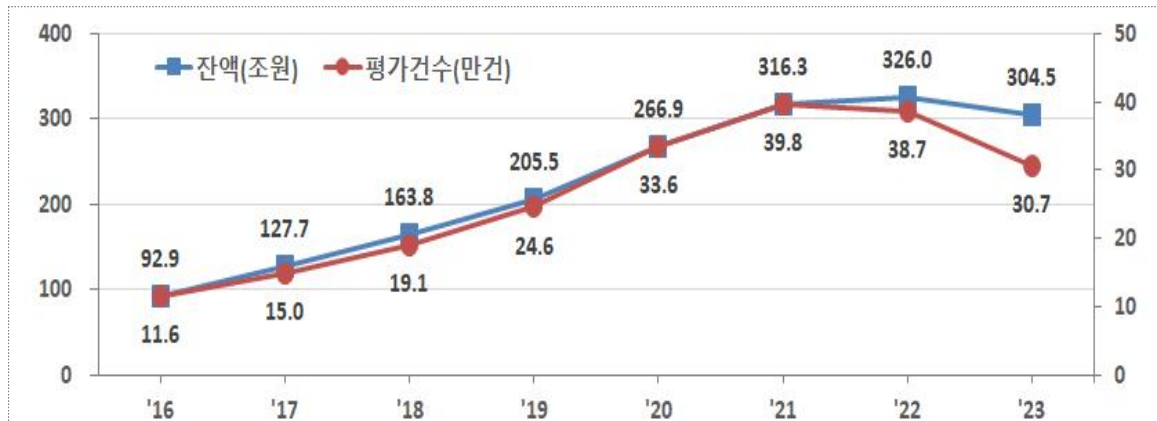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기술보증기금법도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음.

이 차지하는 비중이 29%를 차지하는 등 2014년 기술금융이 도입된 이후 10여년 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림 2] 기술금융 실적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평가사의 부실 또는 위법한 TCB평가 진행, 평가 의뢰자인 은행의 부당한 요구 발생, 금융위원회의 미흡한 제도 운영 등 기술금융 전반에 걸쳐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은 TCB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신용평가사가 허위평가 행위 등을 하였다는 제보를 토대로 이들 5개사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 기관 모두 TCB평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3)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5개사는 최종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기 전 미리 평가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TCB평가 예상결과 제공)하거나, 영업과정에서 은행과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관대한 평가 암시·약속)하였으며, 평가 과정에서 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기술금융 비대상회사 허위평가)하였음.
- 감사원도 기술금융 제도에 대한 감사⁴⁾ 과정에서 TCB 평가서 중 일부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이 중 약 49%에 해당하는 평가서가 부실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TCB평가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음.
- 위와 같은 기술신용평가사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일어난 배경에는 TCB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기술신용평가사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평가 의뢰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⁵⁾.
- 은행은 TCB평가를 의뢰하면서 ① 기술신용평가사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요청하거나, ② 여러 기술신용평가사에 평가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고 원하는 등급을 제공하는 곳에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음.

4) 감사원의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2023. 8. 30. 처분결과 참조

5)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2024. 4. 3.

- 이와 같은 은행의 행위는 기술금융 실적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가감비율에 반영되는 구조에서, 기술금융 실적의 양적 확대를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기술신용평가사는 은행으로부터 많은 평가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기술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대한 등급을 책정하거나 사전에 예상 등급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평가가 이루어짐.
- 금융위원회도 2020년 12월, TCB평가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근절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기술금융과 관련한 제도 운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이 TCB평가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따르는지 점검하지 않았고, TCB평가 결과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반영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평가결과가 첨부된 대출은 모두 기술금융실적에 포함하는 등 기술금융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TCB평가를 수행한 5개 기술 신용평가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제재하였고,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높이고 TCB평가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술금융이 제도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4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⁶⁾하였음.

○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과 2025년 2월에 5개 기술신용평가사⁷⁾에 대해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 ‘관대한 평가 암시·약속’ 등의 사유로 각각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음.

[표 3] 기술신용평가사 제재 주요내용

구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기관제재	기관경고	기관경고	기관경고	기관경고	기관경고
개인제재 (총 251명)	94명 (주의~감봉3월)	42명 (주의~감봉3월)	50명 (주의~감봉3월)	52명 (주의~감봉3월)	12명 (견책~감봉3월)
과태료	14.08억원	11.04억원	10.64억원	11.6억원	11.08억원

*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라 위반 건별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과태료는 건별 부과된 과태료를 합산한 것임.

* 나이스디앤비는 2024년 4월 의결된 제재와 2025년 2월 의결된 제재를 합산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기술금융 개선방안」에서는 TCB평가가 허위 또는 관대하게

6)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2024. 4. 3.

7) 기술신용평가사 6개사 중 한국기술신용평가의 경우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아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이루어지지 않고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편하고, 기술금융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TECH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기술금융 제도가 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지 않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술신용평가사가 위와 같은 허위 평가 등을 진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및 기관·개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 영업정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TCB평가를 위법하게 수행한 5개사에 대해 해당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하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및 기관·개인 제재만을 의결하였음⁸⁾.
 - 감사원도 위 감사결과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이 TCB평가를 부실하게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업정지 등의 근거가 「신용정보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음.

8) 현행 「신용정보법」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동 규정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례가 없고, 동 규정을 근거로 처분할 수 있는 하위규정 및 내부기준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기술신용평가사의 허위평가가 평가 의뢰자인 은행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가 의뢰자인 은행을 제재할 수단이 부재함.

□ 이에 개정안은 ① 기술신용평가사가 허위평가 등을 행한 경우 영업정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② 평가 의뢰자인 은행의 행위규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TCB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신용정보법」 상 제도 정비를 통해 위법한 업무를 수행한 기술신용평가사를 강력히 제재하고, 의뢰자인 은행이 기술신용평가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행위규칙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하에서는 개별 조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함.

2.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업무정지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생략)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u>5의2.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u>
<u>5의2. · 5의3.</u> (생략)	<u>5의3. · 5의4.</u> (현행 제5호의2 및 제5호의3과 같음)
6. 삭제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생략)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 등의 행위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u>3.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신용평가를</u>

<신 설>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u>의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자”라 한다) 또는 그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 4. <u>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하여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	---

□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⁹⁾을 ①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¹⁰⁾ 포함),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③ 기업신용조회업, ④ 신용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③ 기업신용조회업은 다시 1) 기업정보조회업무,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3) 기술신용평가업무로 구성됨¹¹⁾.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다. 기업신용조회업 / 라. 신용조사업

10) 금융거래 관련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의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를 가지는

[표 4]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분류

신용정보회사 (제2조제5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CB) ¹²⁾ (제2조제8호)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제5조) 포함)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제2조제8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 (제2조제8호의3)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
	신용조사회사 (제2조제9호)	

○ 개정안은 이 중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규정된 행위규칙 중 ①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의뢰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관대한 평가를 암시·약속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참고로, 앞서 설명한 기술신용평가사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를 의미함.

○ 2025년 6월말 기준,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총 11개사로, 이 중 9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중 2개 이상의 업무 영역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CB는 Credit Bureau의 약자로, 신용평가를 의미함.

[표 5] 기업신용조회회사 현황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나이스평가정보	○	○	○
KCB	○	○	
SCI평가정보	○	○	○
한국평가데이터	○	○	○
이크레더블	○	○	○
나이스디앤비	○	○	○
한국기술신용평가			○
기술보증기금	○	○	○
신용보증기금	○	○	
테크핀레이팅스	○	○	
비씨카드	○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신용정보법」 제22조의6제2항¹³⁾은 기업신용조회회사¹⁴⁾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행위 규칙)를 규정하고 있음.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4)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함.

○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①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¹⁵⁾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②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신용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12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도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재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2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총 16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6] 기업신용조회회사 금지 행위(행위규칙)

구분	연번	금지행위
법 (§22의6②)	1	·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행령 (§18의5②)	1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15) ①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5%이상 출자한 법인, ②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5% 이상 출자한 법인, ③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인 법인, ④ (①~③)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이상 출자한 법인

	2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5	·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	·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	·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9	·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10	·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12	·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감독규정 (§23의22)	1	· 평가 항목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거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음영된 부분은 개정안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려는 행위규칙을 의미함.

-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이와 같은 행위규칙¹⁶⁾을 위반하게 될 경우
 현행 「신용정보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¹⁷⁾하고 있음.

16) 「신용정보법」 제22조의6제2항 및 그 하위법령을 의미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사들의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전부를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¹⁸⁾이 제출된 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신용정보협회 의견임.

3. 기업신용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신설 등

- 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자(의뢰자)의 행위규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제5항, 제52조제3항).

현 행	개정안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 ④ (생략) <신설>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 등의 행위규칙) ① ~ ④ (생략) ⑤ 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 완료 전 예상 평가결과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행위 2. 신용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의 조정을 요청하는 행위 3.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2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8. (생략) <신설> 4의9.·4의10. (생략) 5. ~ 18. (생략) ④ ~ ⑦ (생략)	제5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의8. (현행과 같음) 4의9. 제22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4의10.·4의11. (현행 제4호의9 및 제4호의10과 같음) 5. ~ 18.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 「신용정보법」 상 행위규칙은 신용정보업¹⁹⁾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TCB평가를 위법하게 수행한 과정에서 평가를 의뢰한 은행의 부당한 요구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에 TCB평가 의뢰자인 ‘은행’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행위규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문언 상 ‘의뢰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자’²⁰⁾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뢰자의 범위에는 은행 외에도 기업신용등급평가 또는 TCB평가 외의 기술신용평가²¹⁾를 의뢰하는 기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규칙의 적용 대상자를 은행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뢰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의뢰자의 범위를 ‘은행’으로 한정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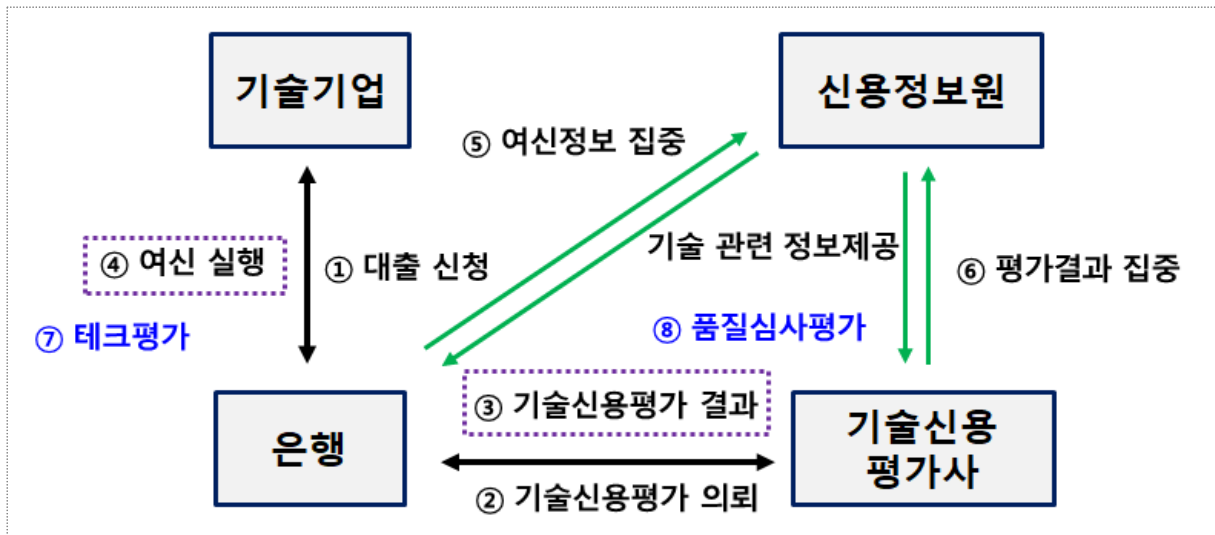
19)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20) 개정안 제22조의6제2항제3호 참조

21) 정부 출연 R&D 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벤처기업 전환, 조달청 입찰 시 기술평가 등 기술금융 외의 용도로 이루어지는 기술신용평가

【참고자료】 기술금융 체계도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 신용평가 품질관리체계(사후관리)까지의 체계 운영



- ①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기업은 은행에 대출 신청
- ② 기술금융 대상 판단 후, 평가사에 기술신용평가 의뢰
- ③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은행에 송부
 - * 기술신용평가사(6개) 및 자체평가은행(10개)에서 표준기술평가모형으로 평가
- ④ 기술신용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여신 실행
 - * 기술등급 T6등급 이상 평가서를 참고한 여신에 대해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
- ⑤ 여신 실행 후, 여신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대출일, 잔액 등)
- ⑥ 평가 후, 평가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발급일, 기술등급 등)
 - * 신용정보원은 기술심사 관련 정보(시장현황 등)를 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에 제공
- ⑦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신·기보 출연금 가감비율에 활용
- ⑧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기술신용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의 기술 평가품질 심사평가

문 의 처
02)6788-5106